



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 http://www.emerics.org/ 2018. 07. 05. 아프리카·중동	「이슈&트렌드」
	<h2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남아공 광업법 개정 논의의 주요 내용 및 평가</h2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작성 김예진 연구원 (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아중동팀)</p>

- 남아공의 광업자원부 장관은 지난 6월 15일에 광업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7월 14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함.
 - 본 개정안은 주마 정부가 흑인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추진한 정책의 일환으로 2017년에 발표한 개정안에 대해 광산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라마포사 정부가 수정하여 발표한 것임.
 - 광산업계는 광산 기업의 흑인 최소 지분 요건을 26%에서 30%로 강화하여 즉시 시행한다는 2017년도 개정안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승소함.
 - 법원은 이미 광업권을 취득한 기업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 정부에서 요구한 지분 소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기존의 수혜자가 되사하거나 지분을 처리할지라도 이를 다시 보충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함.¹⁾

- 광업법 개정의 주요 목적은 흑인들의 광산업 소유권 확대와 광산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광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보다 고르게 분포하기 위한 것임.
 - 현재 남아공의 광산업은 백인 관리자 및 흑인 광부 형태의 고용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광물 자원에 대한 흑인의 소유권은 상대적으로 적음.
 - 2009년에는 흑인의 광물자원 소유권이 약 9% 수준이었으나 주마 前대통령이 흑인의 권리 강화를 주장하면서 현재에는 약 28% 수준으로 증가함.
 - 라마포사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연두교서에서 광산업계와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으며 2017년 개정안의 내용을 다소 완화하여 2018년 개정안을 발표함.²⁾

표 1. 현행 법 및 개정안의 주요 내용 비교

현행 법	2017년 개정안	2018년 개정안
- 2014년까지 흑인 소유의 지분을 26% 이상으로 확대	- 개정안 시행 후 1년 내에 흑인 소유의 지분을 30% 이상으로 확대 - 개정안 시행 이전 시점에 광업권을 취득한 기업들을 포함하여 모든 광산 기업에 적용	- 흑인 지분 소유 요건을 30%로 인상하되 유예 기간을 5년으로 연장 - 기존에 광업권을 취득한 기업들은 예외로 하며 신규 및 계류 건에만 적용

1) 법원은 ‘once empowered, always empowered’ 원칙을 강조하였음.

2) 라마포사 대통령은 광업에 오래 종사하였으며 남아공 최대 노조인 전국광부노동조합(National Union of Mineworkers)을 창립한 바 있음.

		- 단, 2018년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점에 기존에 광업권을 취득한 기업 중 26%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기업은 향후 5년 간 흑인지분율을 4% 이상 의무적으로 인상
- 해당 조항 없음.	- 신규 광업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흑인 소유의 지분이 30% 이상이어야 함. - 그 중 최소 8%는 근로자, 8%는 광산 지역사회, 14%는 흑인기업가에게 배분해야 함. - 또한, 근로자에게 배분되는 8%의 지분 중 5%는 무상(free carried interest)으로 지급해야 하며 지역사회도 마찬가지로 함.	
- 의무 사항 없음. - 단, 광업부장관이 요청할 경우에는 이행 의무가 있음.	- 신규 시굴권의 경우 흑인 지분이 50%를 초과하여야 함.	- 조항 삭제
- 해당 조항 없음.	- 매년 흑인주주들에게 총매출액의 1% 이상을 지급	- 광업권 취득 후 6년째부터 매년 별도의 배당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EBITDA ³⁾ 의 1% 이상을 자격요건에 맞는 직원 및 지역사회에 지급
- 2014년까지 흑인 소유의 기업으로부터 조달 비율 규정: 서비스 70%, 자본재 40%, 소비재 50%	- 흑인 소유의 남아공 기업으로부터의 조달 비율 규정: 서비스 80%, 상품 70%	
- 2014년까지 모든 직급에서 흑인 참여비율을 40%이상으로 규정	- 흑인 및 흑인여성의 참여비율 규정: 이사회(50%/25%), 경영진(50%/25%), 상위 관리직(60%/30%), 중간 관리직(75%/38%), 초급 관리직(88%/44%) 이상	- 흑인 및 흑인여성의 참여비율 규정: 이사회(50%/25%), 경영진(50%/25%), 상위 관리직(50%/15%), 중간관리직(60%/20%), 초급관리직(70%/25%) 이상

자료: Amendment of the Broad Based Socio-Economic Empowerment Charter for the South African Mining and Minerals Industry(2010), Reviewed Broad Based Black-Economic Empowerment Charter for the South African Mining and Minerals Industry(2017), Draft Broad Based Socio-Economic Empowerment Charter for the Mining and Minerals Industry(2018).

□ 과거의 인종차별 정책을 통해 수립된 현재의 고용구조 및 소득구조를 개선할 필요는 있으나 정부차원에서 이행할 수 있는 장기적 투자환경 개선 정책도 요구됨.

- 광산업은 현재 남아공 GDP의 8%, 수출의 약 25%를 차지하는 주요산업으로 광산업의 투자 환경은 향후 5년간 천억 달러 규모의 해외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라마포사 정부의 목표와 직결되어 있음.⁴⁾

○ 2014년에는 광산업의 규모가 GDP 대비 15.5% 규모로 직접 고용 인원도 약 5만 명에 달하였으나 최근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크게 위축되어 2017년에는 직접 고용 인원이 약 4만 7천 명으로 감소함.⁵⁾

- 남아공광물위원회(Minerals Council South Africa)는 특히 10%에 달하는 무상 성과보수(free carried interest) 및 EBITDA 규제 항목은 향후 광산업에 대한 투자를 크게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함.

- 따라서 기업에 직접적인 경제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보다는 흑인들의 교육수준 개선, 산업 다각화,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부 및 민간의 협동 펀드 설립, 흑인 기업 육성 지원 등과 같은 장기적인 정책이 강화되어 수반될 필요가 있음. **EMERiCs**

3) Earnings Before Interest, Taxes,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의 약자로 법인세, 이자 및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기 전 기업의 순수 영업이익을 의미함.

4) Chamber of Mines of South Africa, *Facts and Figures 2016*, June 2017.

5) PWC, *SA Mine 9th Edition: Highlighting trends in the South African mining industry*, September 2017.